

장애인 · 노인 · 임산부등의 편의 증진시설 실태조사 리스트 개발연구 -공공건물을 중심으로-

A Study on Developing the List of Actual Condition Research to Improve the Facilities for the handicapped, aged men, pregnant women and nursing mother
- a focus on public building -

유석종(Yoo, Suk-Jong)

중부대학교 산업과학대학원 산업디자인과 교수

양우창(Yang, Woo-Chang)

중부대학교 산업과학대학원 산업디자인과 교수

유상완(Yoo, Sang-Wan)

중부대학교 산업과학대학원 산업디자인과 시간강사

온순기(On, Sun-ki)

산업과학대학원 산업디자인과

1. 서 론

2. 장애인·노인·임산부 환경과 편의시설에 대한 이론적 고찰

2.1 장애인과 환경

2.2 편의시설의 개념 및 기능

3. 연구내용 및 평가방법

3.1 조사대상의 선정 및 조사리스트 추출방법

3.2 실태조사리스트의 추출

4. 분석 및 평가방법

4.1 분석 방법

4.2 평가 방법

5. 결 론

참고문헌

(要約)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본격적인 관심은 1988년 서울 장애인 올림픽대회를 계기로 장애인의 물리적 환경개선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장애인복지법이 전면 개정되어 편의시설 설치조항이 구체화된 1990년도 초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서구의 유니버설 디자인개념의 확산과 함께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방향에 대한 새로운 개념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즉, 장애인을 독립적인 주제로 다루는 물리적 환경은 그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비장애인으로부터 격리시키게 되고 그들의 차별감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았으며,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전용 보다는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접근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원칙에서 출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제정·시행되고 있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1998)'은 이러한 움직임을 반영하기 위하여, 적용 대상을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임산부 등으로 확대하였고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안전하고 편리하며 동등하게 이용하도록 하여 이들의 사회참여를 증진시켜야 함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또한, 장애인들이 다양한 유형의 차별에 대해 직접 상담을 의뢰, 당사자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는 등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편의시설의 설치수가 급속히 증대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편의시설이 양적 및 질적으로 기본적 수준을 갖추고 있지 못해,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의 생활환경을 축소시키며 그들의 사회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우

리나라의 공공건물을 볼 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에 활동에 시설적 부적절함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공건물 이용 시 발생되는 시설적 부적절함을 조사할 수 있는 실태조사리스트를 개발하여 시설 특성에 대한 개선요구를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공공건물 편의시설 관리기준 방향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It was 1988 when people pay attention to an importance of the facilities for the handicapped, with Seoul Paralympics. In early 1990s, regular efforts were made to improve a physical environment for the handicapped, which results in reforming the Welfare Law for the Handicapped all over the surface. However, keeping pace with the expansion of the western universal design concept, it is required to evaluate a new concept in which way the facilities for the handicapped must be installed. That is, any physical environment, which regards the handicapped as an independent subject, tend to isolate them from normal people rather than satisfy their needs. making the handicapped feel more discriminated. All the facilities for the handicapped has to reflect a general idea that the facilities are opened for all the people including the handicapped. Being recently reformed and enacted in order to reflect this essential point, 'the law of contributing to the convenience of the handicapped, aged men, pregnant women and nursing mother(1998)' even covers the aged men, pregnant women and nursing mother, not to mention of the handicapped. In addition, the law states clearly that all the handicapped can share all the facilities with the normal people, inducing the handicapped to more actively participate in society. Consequently, the handicapped are acquiring their rights by directly demanding for correction of varied discrimination.

Though even more facilities have been provided, most of them are deficient in the quality, setting limits to the handicapped person's living field as well as social activities. Especially, most public buildings in our country rarely provide the adequate facilities for the handicapped, aged men, pregnant women and nursing mother. Therefore, this study is focused on developing the list of actual condition research that can effectively detect the inadequacy of facilities in public buildings. Then it will find the aspects to be improved in a systematic and scientific way to propose a practical method to improve the facilities in public buildings.

(Keyword)

A public building, The Disabled, The aged, Pregnant women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본격적인 관심은 1988년 서울 장애인 올림픽대회를 계기로 장애인의 물리적 환경개선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장애인복지법이 전면 개정되어 편의시설 설치 조항이 구체화된 1990년도 초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밝힌 장애인 등록인원 <표1>, 성별 및 지역별 <표2>와 같이 해마다 인원 및 지역별 증가추세에 있다.

<표1> 연도별 등록인원

년도	인원수	증가인원
1994	347,275	31,045
1995	378,323	
1996	416,889	63,299
1997	480,188	
1998	582,913	170,538
1999	753,451	
2000	972,087	322,187
2002	1,294,254	

자료: 보건복지부 장애인제도과 연도별 장애인 등록장애인수를 재구성

<표2> 2002년 12월말 등록장애인 구분

구분	계	남	여
서울	194,496	133,954	60,542
부산	83,445	58,343	25,102
대구	58,656	39,892	18,764
인천	64,281	45,598	18,683
광주	31,991	21,043	10,948
대전	33,292	22,746	10,546
울산	20,881	14,390	6,491
경기	212,431	148,458	63,973
강원	52,047	35,884	16,163
충북	43,527	29,748	13,779
충남	62,395	42,534	19,871
전북	70,768	45,855	24,913
전남	74,656	48,873	25,783
경북	80,930	54,805	26,025
경남	80,412	54,730	25,682
제주	14,263	8,902	5,361
시도	1,178,471	805,845	372,626

자료: 보건복지부 장애인제도과 연도별 장애인 등록장애인수를 재구성

그러나, 최근 들어 서구의 유니버설 디자인¹⁾ 개념의 확산과 함께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방향에 대한 새로운 개념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즉, 장애인을 독립적인 주체로 다루는 물리적 환경은 그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비장애인으로부터 격리시키게 되고 그들의 차별감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으며,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전용 보다는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접근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1)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사람의 능력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가능한 많은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환경과 제품을 창조하기 위한 총체적 접근 방법이다. Center for the Universal Design, The Universal Design File, North Carolina University, NC, 1998

원칙에서 출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노동부에서 발표한 산업재해분석에서 65년간 재해율이 46배가 들어났으며 보건사회연구원이 밝힌 장애유형별 장애원인 중 후천적 원인이 89.4%로 나타났으며, 가구원 중 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1,304.7 천 가구로 추정되어 전체 14,683.5천가구의 8.9%로 나타났다.²⁾ 또한 고령화는 서구 선진국 및 일본은 이미 14%를 상회하여 인구의 고령화가 매우 진전 됐음을 알 수 있으며, 2020년에는 20%를 상회하여 초고령화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구성비는 7.1%로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진입 하였으나 선진국 수준에 비해 낮으며, 2025년 이후에는 현재 선진국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00년 노령화 지수로는 현재 32.9%, 2030년 120.3%이며 유년 인구 100명에 노령인구 33명이었으나 2030년에는 120명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즉 장애인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이로 인한 국민들의 장애인에 대한 의식의 선진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3> 주요국의 장애 출연율 (단위: %)

구분	한국 (95년)	한국 (00년)	일본 (95년)	독일 (91년)	미국 (95년)	호주 (93년)
출현율	2.35	3.09	4.8	8.4	20.6	18.0

출처: 한국장애인 복지체육회, “장애인주권대방안 및 장애분류 등급판정기준에 관한 연구”, 1999.

<표4>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비교

구분	노동자수	재해자수	사망자수	재해율(%)
1964	81,798	1,489	33	5.91(65년)
2000	9,485,557	68,976	2,528	0.73
비교	116배 ▲	46배 ▲	77배 ▲	88 ▼

출처: 2001. 7. 노동부, “2000년 산업재해분석”

<표5> 장애유형별 장애원인 (단위: %)

구분	지체	뇌병 변	시각	청각	언어	정신 지체	신장	심장	계
선천적원인	1.7	2.4	3.4	6.0	14.3	23.8	4.3	3.4	4.4
출산시원인	0.6	4.1	1.1	1.4	10.5	12.2	0.0	0.8	2.3
후천적원인	96.3	91.6	92.2	84.7	81.4	44.8	93.6	95.8	89.4
미상	1.4	1.8	3.3	7.8	13.8	19.2	2.1	0.0	3.9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말달장애(자폐증), 정신장애 제외

출처: 2001. 보건사회연구원,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제정·시행되고 있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1998)”은 이러한 움직임을 반영하기 위하여, 적용 대상을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임산부 등으로 확대

2) 2001. 보건사회연구원,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개별 장애 유형별 장애 출현율”

3) 통계청, “장애인구조계” 1996.

하였고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안전하고 편리하며 등등하게 이용하도록 하여 이들의 사회참여를 증진시켜야 함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또한, 장애인들이 다양한 유형의 차별에 대해 직접 상담을 의뢰, 당사자들의 권리 의식이 높아지는 등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높아지고 있다.⁴⁾ 그러나, 편의시설의 설치수가 급속히 증대됨에도 불구하고 보건사회연구원의 재가장애인의 사회나 국가에 대한 복지 육구<표6>조사와 같이 대부분의 제도 및 시설이 양적 및 질적으로 기본적 수준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고, 장애유형별 장애원인을 보면, 장애인의 64.5%가 집밖활동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노령장애인(85.7%), 심장장애(84.6%), 신장장애(73.9%)를 가진 장애인이 집밖활동의 불편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이 집밖 활동 시 불편을 느끼는 원인은 몸이 아파서(76.1%), 계단 및 승강기의 편의시설 부족(59.0%), 버스 전철 등 대중교통수단의 편의시설 부족(5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⁵⁾ 이로 인하여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의 생활환경을 축소시키며 그들의 사회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공공건물⁶⁾을 볼 때 <표7>과 같이 장애인 공무원 고용율이 증가하고 있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공공건물을 이용에 시설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공공건물의 물리적 접근성을 파악하는 조사리스트 개발에 연구 초점이 있기 때문에 물리적 제약이 가장 많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회적 약자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네가지의 연구의문에서 시작되었다. 첫 번째 의문은 장애인에 대한 영역은 어디까지인가? 두 번째 의문은 정부시책 및 지방자치단체의 움직임은 어떠한가? 세 번째 의문은 관련법을 어느 정도까지 이행하고 있는가? 네 번째 의문은 편의시설 실태조사리스트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라는 의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공건물을 이용 시 발생되는 시설적 부적절함을 조사할 수 있는 실태조사리스트를 개발하여 시설 특성에 대한 개선요구를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공공건물을 디자인에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구체적 방향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 4)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장애인차별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토론회를 개최, 지난해 인권센터에 접수된 780건의 상담 분석결과 ▲시설장애인권리 14 ▲여성장애인권리 16 ▲생존권 30 ▲건강권 13 ▲교육권 16 ▲접근권 22건 등의 상당이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 5) 2001, 보건사회연구원,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장애인 유형별 장애원인'
- 6)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령집, 1999, 동시 행령: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정의)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및 시설"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건물 및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 4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 건축물 중 공동주택(기숙사에 한한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하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 문화 및 접객시설, 판매 및 영업 시설, 의료설, 교육시설 및 복지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자동차관련시설, 공공이용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2. 도시철도법에 의한 도시철도 역사, 고속철도건설촉진법에 의한 고속 철도역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정류소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표6> 재가장애인의 사회나 국가에 대한 복지육구(우선순위)

구분	남	여	1순위
생계보장	50.1	50.7	50.3
의료혜택 확대	16.3	20.7	17.9
세제혜택 확대	5.3	3.2	4.5
건물, 도로 등의 편의시설 확대	1.8	1.3	1.8
가사지원서비스(간병인, 도우미 등)	0.7	2.1	1.2
주택보장	5.0	3.9	4.8
결혼상담 및 알선	1.5	0.6	1.1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4.9	3.8	4.5
교통수단 이용편의 확대	2.9	1.9	2.5
보장구 및 생활편의용품 개발, 보급	1.2	2.1	1.5
특수 교육의 확대, 개선	1.6	1.9	1.7
장애인 복지시설의 확충, 개선	3.3	2.0	2.8
문화 및 여가생활의 확대	0.3	0.7	0.4
없다	4.2	4.8	4.4
기타	1.0	0.6	0.8
계	100.0	100.0	100.0

출처: 2001, 보건사회연구원,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표7> 연도별 장애인 공무원 고용율 (단위: %)

구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비율	0.71	0.78	0.88	0.99	1.08	1.26	1.33	1.48

출처: 2001 중앙인사위원회, "연도별 장애인 공무원 고용율 증가추세"

1.2 선행연구의 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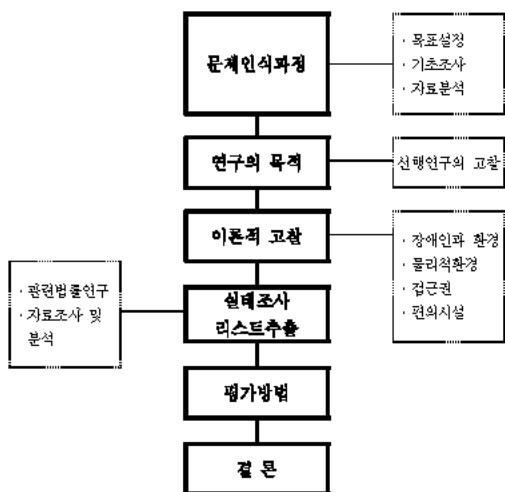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연구는 1980년대부터 시작되어 왔지만 적극적인 연구는 1990년도 초부터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연구 방향은 시설의 운용실태조사연구, 시설의 접근 이용의 문제점연구, 장애인 복지정책연구,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실태연구 등으로 시설에 대한 포괄적 이용문제점 측면으로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자와 공공기관 접근성에 관련 법규와 요구에 맞는 세부적 시설의 실태 조사 연구가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표8>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선행연구

구분	년도	연구자	연구제목	연구내용
시설의 운용실태	2002	월유승	중증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	직업생활 시설의 운영실태조사
	2002	오병자	정신장애인 사회복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연구	사회복귀시설의 운영실태조사
접근의 문제	1998	허민경	장애인의 공공시설 이용접근권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시설접근의 이용 문제점
공공기관 및 공무원	2001	김홍수	장애인 공무원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에 근무하는 장애인의 직무만족
	2001	임현주	장애인 편의시설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경기도 공공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장애인 복지정책	1995	배성민	한국 장애인 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장애인 복지정책연구
	1994	고숙진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장애인 복지정책의 개선방향

1.3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공공건물에서의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약자들의 활동성을 파악할 수 있는 실태조사리스트개발이라는 연구목적을 두고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먼저 목표설정, 기초조사 및 자료분석을 통한 문제인식과정을 거쳐 선행연구의 분석을 통한 연구의 목적을 결정한다. 목적에 따른 장애인의 범주와 환경, 물리적환경, 접근권, 편의시설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객관성을 인식하고 관련법 연구 및 자료조사분석을 통하여 실태조사리스트를 연구한다.



<그림1> 실태조사리스트개발 과정

2. 장애인·노인·임산부 환경과 편의시설에 대한 이론적 고찰

2.1 장애인과 환경

장애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영역은 <표9>에서 보는 것과 같이 물리적 환경, 문화적 환경, 그리고 사회(심리)적 환경으로 구성된다. 권도용⁷⁾과 성정현⁸⁾의 장애인 환경영역에 대한 분류 체계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지만 내용적 구성에 있어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권도용은 물질적 환경을 사회적 목적달성을 위한 물리적 시설설비로 구분하고 있는 반면에 성정현은 정보도 물리적 환경의 한 측면으로 간주하고 있다. 또 한 권도용은 사회구성원의 편견이나 인식 등을 사회 심리적 환경으로 구분하는 반면에 성정현은 사회적 관계망이나 사회 체계를 사회적 환경으로 구분하고 사회적 인식은 문화적 환경으로 구분하고 있다.

7) 권도용, "장애인 재활복지의 이념과 목적" 한국 아·태 장애인 10년 연구모임, 1996.

8) 성정현, 지체장애인과 환경간의 적응적 적합성(Adaptive fit)에 관한 연구, 서울대, 1990.

<표9> 장애인의 환경영역

구 分	1	2
환경영역	물리적 환경 · 물리적 환경 · 정보 · 사회적 인식	· 거주 및 생활공간 · 사회적 목적달성을 위한 물리적 수단: 주택, 건물, 시설, 도로설비, 이동수단, 기계 및 재융구 · 상징문화: 사회의 유통양식, 전통, 믿음 등 · 규범문화: 도덕, 윤리 등
	사회 심리적 환경 · 사회적 관계망: 개인과의 관계 · 사회체계: 경제, 의료, 직업	· 사회구성원의 편견, 선입관

1. 성정현, 1990. 2. 권도용, 1995

2.1.1 물리적 환경개선의 의의

장애인 복지에서 물리적 환경개선의 중요성은 "장애인 기회 평등에 관한 표준규정"⁹⁾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규정은 접근성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장애인이 접근하기 쉬운 물리적 환경을 만들도록 하는 실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정보와 의사전달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한 것이었다.¹⁰⁾ 물리적 환경 개선은 정상화(Nominalization)라는 장애인 복지의 기본이념이 건축이나 교통분야에 파급되어 장애인의 행동과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발전되어 온 것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¹¹⁾

2.1.2 접근권의 의미

물리적 환경개선, 즉 장애인의 이동과 접근의 보장은 단지 복지대책이나 시설 등을 마련해 준다는 장애인 복지대책 뿐만 아니라 그 대책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준다는 의미의 복지이다. "접근"이라는 용어는 사회적 접근, 경제적 접근, 물리적 접근 등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그 의미에 따라 각각의 대책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¹²⁾ 법률적인 측면에서 접근권(Right to Access)이란 헌법상 규정된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권리로 "국민주권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의 헌법상의 조항들을 근거로 하고 있다. 법률적으로 볼 때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접근법이란 자유권적 기본권 및 사회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이다. 권리의 주체로 하여금 권리의 목적이나 대상에 근접하여 그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법률상 부여된 권리를 실질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기본권 자체가 권리의 실현과정이라고 본다면 접근권은 "수단"이 아니라 자유권적 기본권, 사회권적 기본권과 같은 실체적 권리로 볼 수 있다.¹³⁾

2.2 편의시설의 개념 및 기능

편의시설은 장애인들이 신체적, 정신적 결함에 의해 정상인들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시설을 사용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9) 제48차 UN총회에서 제정, 1993.12.20

10) W. Goodman, "장애인의 이동훈련" 정일희관(역), 1995

11) 에이타 아시로 외, 송영욱(역), "ADA의 충격" 한국장애인출판부 1993. 150p

12) 조철호, "장애인을 고려한 도시가로공간의 Barrier-Free 계획", 제2회, 1994.05

13) 강경선, "접근권이란 무엇인가?" 함께걸음, 1994

따르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사회에 대한 불완전을 최소화 또는 제거하기 위한 기구나 시설, 설비를 말한다. 즉 장애인들이 사회활동을 하거나 단순한 이동 등을 할 때 정상인들과 전혀 다른 없을 정도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의미하며, 모든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불리(Handicap)를 인적, 물적, 사회적 활동과 협력을 통해 가능한 최대한으로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¹⁴⁾ 편의시설의 설치는 단순히 장애인의 신체적 편리함만을 기능으로 하지 않으며 설치에 따라 발생되는 경제적, 사회적 기능이 내포되어 있다. 그 기능으로는 첫째 장애인의 신체상의 불리함을 보완하여 이동이나 활동을 편리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장애인의 정신적 측면에서 사회의 일원이 되어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세째, 경제적 측면에서 장애인이 스스로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인력의 낭비를 방지하게 된다. 넷째, 사회적 측면에서 광범위하게 보면 장애인의 고용을 확대시킴으로써 고용 확충의 어려움을 해소하게 된다.¹⁵⁾

3. 연구내용 및 평가방법

3.1 조사대상의 선정 및 조사리스트 추출방법

<표1>과 같이 장애인 등록인원의 증가, 초고령화에 따른 노약자계층의 증가, <표7>장애인공무원 고용률 증가추세 등으로 장애인의 물리적 접근의 필요에 의한 편의시설의 설치가 사회적 Issue로 되면서 이들의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회적 법규 및 제도들이 발생하고 강제성을 띠게 되는 공공기관으로 정하고 자료수집방법은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법률규정, 장애인 복지법, 건축법, 주차장법,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령 및 시행규칙 등을 수집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접근적 자료를 수집하고 사회적 활동의 접근의 어려움을 수집하여 자료를 재구성하여 조사리스트를 추출한다.

3.1.1 조사대상의 선정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대상은 크게 건물 외부공간과 건물 내구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¹⁶⁾ 우선 외부공간에 설치하는 편의시설은 보행로, 도로, 교통도로 등의 통행로와 각종 설치물, 주차장, 안내표지 등 건물을 둘러싸고 있는 건들로 다른 건물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내부공간에 설치되는 편의시설로는 건물내부의 계단, 승강기, 출입구, 화장실 등이 있는데, 이들은 건물 내에서의 장애인의 활동을 용이하게 된다.

<표10>장애인 편의시설 종류

분류	종류
건물외부시설	보행로, 도로, 교통도로 등 통행로, 각종 설치물, 교통시설, 기타설비
매개시설	주차장
건물내부시설	계단, 출입구, 통로, 경사로, 승강기, 화장실, 기타설비
공통시설	정보통신시설, 안내표지

<표10>의 편의시설들은 외부공간과 내부공간에 연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배치되어야만 장애인의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단위건물 내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건물과 건물을 연결하여 주는 외부공간의 보행로나 교통시설이 장애인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면 건물에 대한 접근자체가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장애인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건물내부 시설뿐만 아니라 건물과 건물, 또는 자택과 목적지를 연결하는 도로(보도, 획단보도 등), 교통시설 등의 상호순환(Circulation)이 어느 지점에서도 단절되지 않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¹⁷⁾ 즉 장애인을 위한 물리적 환경개선의 주요대상인 편의시설이 장애인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건물내부, 건물내부와 외부의 연결, 그리고 건물외부공간이 체계적으로 연결되어야 함으로 이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한다.

3.1.2 실태조사리스트 추출방법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법률규정, 장애인 복지법, 건축법, 주차장법,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등을 기초로 하여 조사대상별 구분조사리스트를 추출한다.

<표11>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¹⁸⁾

편의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		
	주 출 입구	주 출 입구	출 입구 (e)	복 도	계 단	대 번 기	소 번 기	세 면 대	접 자 류	유 드 및 안내 설비	경 보 및 페 닌 설비
대상시설	증	근	증	증	증	증	증	증	증	증	증
근린	음·민·동사무소 친환경·우체국·전신 생활·전화국·보건소·의료보 험조합·기타 이와 유사 한 종도의 시설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업무	국가 또는 자발자치단체 의 회사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시설	금동일소·사무소·신문 사·오피스텔·기타 이와 유사·한 종도의 시설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공공	방송국·기타 이와 유사 한 종도의 시설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용지	전신전화국·기타 이와 유사·한 종도의 시설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유도 및 안내설비 중 전자문자안내설비는 민원실 등 이용이 많은 곳 외에는 권장사항임

당해 용도에 쓰이는 비단면적의 힘개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복도계단 또는 승강기는 권장사항임

14) 서선호, “우리나라 장애인편의시설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경희대, 1993.

15) 서선호, “우리나라 장애인편의시설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경희대, 1993. p17-18

16) 권오선 외, “서울시내 공공건물의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실태조사”국립재활원, 1993.

17) 박용환 저 “장애인을 위한 건축설계”공간사, 1992, P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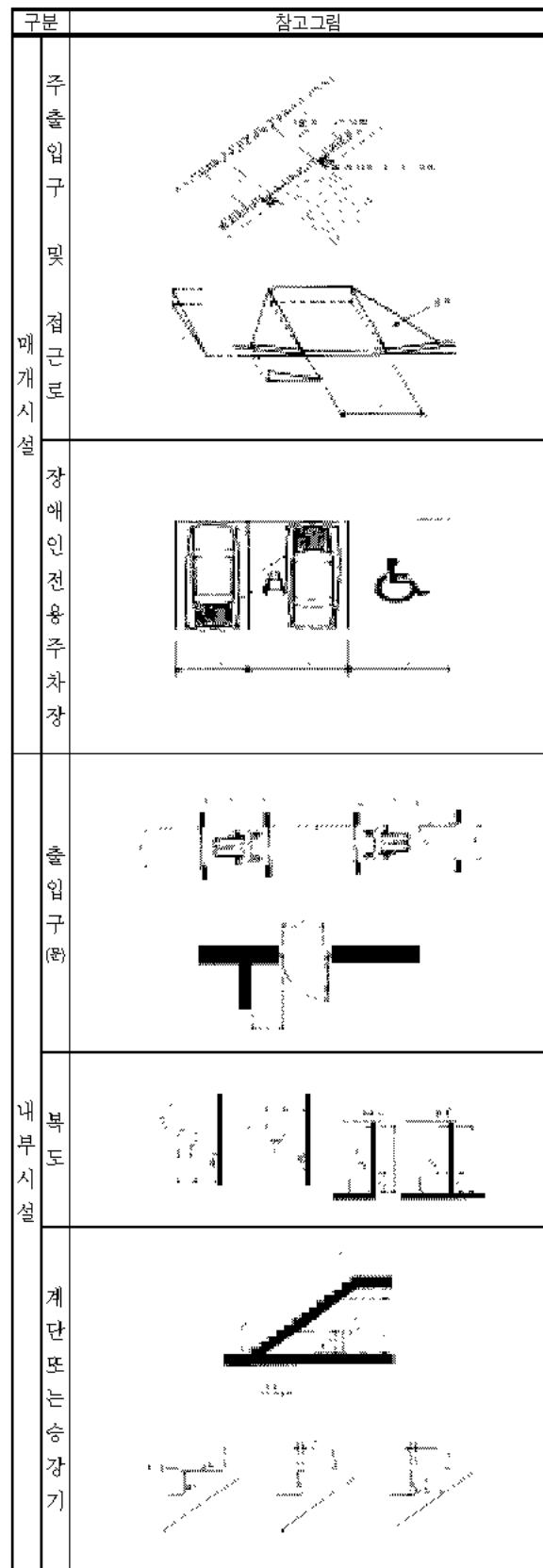
18)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대상별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를 재구성

<표12> 대상시설별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설치기준¹⁹⁾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1) 장애인들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a) 대상시설 외부에서 건축물의 주 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는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료족·기울기와 비단의 재질 및 미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b) 접근로를 (a)의 주 출입구에 연결하여 시공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균형이거나 주 출입구부 부 출입구가 장애인들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 출입구 대신 부 출입구에 연결하여 접근로를 설치할 수 있다.
(2)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a) 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들을 주차장별량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보리친 위치에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미만인 경우를 제외하며, 신설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이하의 경우는 이를 1대로 본다. (b) 자동차관련 시설 중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인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주차장별량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보리친 위치에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3)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a)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턱 낮추기를 하거나 헤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b) (a)의 주 출입구의 높이차이를 얹에는 것이 구조적으로 균형이거나 주 출입구보다 부 출입구가 장애인들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 출입구 대신 부 출입구의 높이차이를 얹을 수 있다.
(4) 장애인들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등	(a)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건축물 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시류실 등의 출입구(중성 적어도 하드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는 경우 장애인들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료족·횡재 및 부작을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b) 교통시설의 승강장에 이르는 계단구조 적어도 하거나 장애인들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데리 등을 고려하여 보리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5) 장애인들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등	(a) 복도는 장애인들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유료족, 비단의 재질 및 미감과 부작을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b) 교통시설의 주 출입구로부터 대간실 및 승강장에 이르는 통로는 유료족, 비단의 재질 및 미감과 부작을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6) 장애인들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계단	(a) 장애인들이 건축물의 계단에서 다른 층으로 보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보리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계단을 승강기, 장애인을 에스컬레이터, 헬리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1층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 (a)의 계단을 중 6층 이상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층 거실의 비단면적 300제곱미터내미다 1개소이상의 직등계단을 설치한 경우를 제외함)에 균일공사실, 노후자사시설, 장애인시설 및 노인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등 학교 및 도서관, 공공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관광점화시설등 공연장 및 관광장, 전시시설, 방송통신시설등 방송국, 청소년수련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을 승강기, 장애인을 에스컬레이터, 헬리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c) 층수가 2층 이상인 교통시설에는 장애인들이 주 출입구로부터 대간실 및 승강장에 있는 경사지 보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을 승강기, 장애인을 에스컬레이터, 헬리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d) 교통시설의 승강장은 장애인들이 보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울기, 비단의 재질 및 미감과 차량의 간격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e) 교통시설 중 택시승강장과 차도의 경계에 높이차이가 있는 때에는 턱 낮추기를 하거나 연식차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장애인을 위한 좌장실	좌장실은 장애인들이 보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비단의 재질 및 미감과 부작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 장애인을 대변하는 날자를 및 자리를 각 1개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8) 점자블록	(a) 건축물의 주 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b) 교통시설의 주 출입구로부터 매표소·대간실 및 승강장에 이르는 통로(시설관리자 등으로부터 벌도의 상시인터넷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c) 교통시설 중 버스정류장 및 택시승강장의 승·하차장에는 시각장애인의 위치를 감지할 수 있도록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9) 시각 및 청각장애인 유도·안내설비	(a) 시각장애인의 시설을 보의를 위하여 건축물의 주 출입구 부근에 절자안내판·축지식 안내판·음성안내장치 또는 기타 유도신호장치를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b) 비단점자블록의 노선안내등기기에는 시각장애인의 이용선택을 위하여 음성안내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c) 공원·근린공공시설·장애인시설·교육연구시설·공공업무시설·타미널 및 역사의 주변·시각장애인 일정기지지역 및 시각장애인의 이용이 어렵거나 타당성이 있는 설계도구가 있는 곳에는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신호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d) 청각장애인의 시설을 보의를 위하여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이 많은 곳에는 전자문자판이나 또는 기타 전자문자안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0)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로·피난설비	(a) 시각 및 청각장애인들이 위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을 피난구유도·통로유도등 및 시각장애인을 경보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b) 교통시설의 승강장에서 장애인들이 후학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난간 등 후학방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1) 장애인들의 이용이 가능한 철수대 또는 작업대	음·민·동·시내수소 및 장애인시설 등의 철수대 또는 작업대는 장애인들이 보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형태·규격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장소에 각각 2대 이상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중 1대만은 장애인들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3.1.3 실태조사리스트 작성의 규정도식

실태조사리스트작성에 앞서 편의시설별 규정을 도식화하여 실태조사리스트의 이해를 돋는다.



<그림2> 시설 규정 도식 1

1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령집 별표2를 재구성.

구분	참고그림
대변기	
위생시설	
세면대	
안내점자블록	
기타시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편의시설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 제1항 관련)을 재구성

<그림3> 시설 규정 도식 2

3.2 실태조사리스트의 추출

3.2.1 작성방법

실태조사리스트의 작성 형식은 “시각장애인의 접근,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실내 환경적 요소에 관한 체크리스트 개발”²⁰⁾과 “한국불교 건축문화 양식을 적용한 사찰 공중화장실 디자인 연구”²¹⁾를 기초로 작성되었다.

3.2.2 조사내용

<표11>과 같이 조사대상을 세부 분석할 수 있도록 조사영역을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로 나누고 <표13>과 같이 세부내용작성기준을 근거로 실태조사리스트를 도출한다.

<표13> 조사리스트 내용작성기준

번호	관련 법
A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편의시설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
B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편의시설의 안내표시기준(제3조)
C	주차장법 시행규칙(제3조)
D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설비)
E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제6조)
F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규칙(제6조)
G	건축법 시행령(제49조)
H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
I	건축물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J	장애인 편의시설 설계지침” 한국장애인재활협회, 1995

3.2.3 실태조사리스트

(1) 매개시설

<표14> 건물진입로

시설	세부항목	작성기준
보도	휠체어사용자 통행위한 걸과로(보도)의 유호높이가 1.2m이상인가?	A-제1항, J
보도	휠체어 또는 유모차가 교행할 수 있도록 50m마다 교행구역(15×15m)이 있는가?	A-제1항
보도	경사진 보도 등이 연속될 경우 휠체어사용자의 휴식공간(30m마다 15×15m) 이상의 수평면으로 편평이 있는가?	A-제1항
보도	보도 등의 기울기는 1/18이하(지형상 어려운 경우 1/12)인가?	A-제1항, J
보도	보도와 차도의 경계부분이 구분(바닥재의 질감 및 색상포함)되어있는가?	A-제1항
보도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은 높이차이가 3cm이하로 설치되어있는가?	A-제1항, F, J
경사로	언식경사로의 유호높이는 0.9m이상인가?	A-제1항
경사로	언식경사로의 기울기는 1/12이하인가?	A-제1항, J
가로수	가로수는 지면에서 2.1m까지 가지치기가 되어있는가?	A-제1항, J
유도블록	횡단보도의 진입부분은 점형블록과 선형블레이어 설치되어있는가?	A-제1항

<표15> 주차구역

시설	세부항목	작성기준
표지	주차구역에 장애인전용표지가 되어있는가?	A-제1항
바닥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가 1대에 대하여 3.3m×5m이상인가?(단, 평행주차형식은 2m×6m이상)	A-제1항, C
바닥	주차공간의 바닥면은 높이차이가 없고 기울기가 1/50이하인가?	A-제1항
바닥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에 이르는 통로의 높이차이가 없고 유호높이 1.2m이상인가?	C, J

20) 천진희·김혜원, 실내디자인 24호, 한국실내디자인학회 pp208-219

21) 온순기, 중부대 산업과학대학원, 2001

<표16> 주출입구

시설	세부항목	작성기준
리 프 트	건축물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차이는 3cm이하인가?	A-제5호
	휠체어리프트가 설치되어 있는가?	A-제11호, J
	휠체어리프트가 설치되어 있는가?	A-제11호
	휠체어리프트를 접었을 때 벽에서 0.4m 이상 둘출되거나 아니한가?	A-제11호
	수직형 휠체어의 경우 유호바닥면적을 확0.9m 이상, 깊이 1.2m 이상인가?	A-제11호
	경사로의 유호폭이 1.2m 이상인가?(단 불가피할시 0.9m 이상) G, J	A-제12호, J
경 사 로	경사로가 있을 시 0.75m 이내에 따라 창(1.5m~1.5m)이 설치되어 있는가?	A-제12호, J
	경사로의 기울기는 1/12 이하인가?(단 1m 이하), 상시보조가 있을지 1/8?	A-제12호, J
	경사로에 추락방지턱(5cm 이상) 또는 축벽이 설치되어 있는가?	A-제12호, J
	경사로의 길이가 1.8m 이상, 높이 0.15m 이상일시 양쪽면의 손잡이가 있는가?	A-제7호
손 잡 이	경사로 시중점 전후에 1.5m 이상 여유공간이 있는가?	J
	경사로의 바닥은 미끄럼지 않고 내구성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였는가?	J
	손잡이가 있을 시 시작과 끝부분에 수평손잡이(0.3m)가 연장 설치되어 있는가?	A-제7호
손 잡 이	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m 이상 0.9m 이하로 설치되어 있는가?	A-제7호, J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굽질부분에는 점자표지판이 부착되어 있는가?	A-제7호

(2) 내부시설

<표17> 출입구(문)

시설	세부항목	작성기준
유 호 폭 및 휠 체 어 리 프 트	출입구(문)은 그 통과유호폭을 0.8m 이상인가?	A-제6호, J
	출입구(문)의 전면유호거리는 1.2m 이상인가?	A-제6호
	출입구(문)과 직교하는 축벽의 거리는 0.6m 이상인가?	A-제6호
	출입구의 바닥면에는 문턱이나 높이차이가 없는가?	A-제6호, H, J
형 내	출입문은 회전문을 제외한 다른 형태의 문을 설치하였는가?	A-제6호
	미닫이문은 가벼운 개걸로 되어있고 덕이 있는 문지방이나 품이 없는가?	A-제6호
손 잡 이	여닫이문에 도어체크가 설치되어 있고 문이 닫히는 시간이 3초 이상인가?	A-제6호
	출입문에 헤비형이나 수평 또는 수직막대형으로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는가?	A-제6호
	출입문의 손잡이는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0.8m~0.9m 사이에 있는가?	A-제6호
	건축물 주출입구 0.3m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작장애인을 위한 바닥계의 길강 등을 달리 하였는가?	A-제6호
손 잡 이	건축물 주출입구가 자동문일 경우에는 미작동시 시설관리자 등을 호출할 수 있는 벨이 설치되어 있는가?	A-제6호

<표18> 복도 및 통로

시설	세부항목	작성기준
복 도	복도의 유호폭이 1.2m 이상으로 되어 있는가?(단 복도 양옆에 거실이 있을 경우 1.5m 이상)	A-제7호, J
	복도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가 있는가?(단 시설상 부득이한 경우 경사로 설치)	A-제7호
바 닥 면	바닥면은 미끄럼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되어있고 넘어졌을 경우 가볍게 충격이 적은 재료를 사용하고 있는가?	A-제7호, J
	복도 축면에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였는가?(단 방화문 등의 설치를 제외)	A-제7호
손 잡 이	손잡이가 바닥면으로부터 0.8m 이상 0.9m 이하로 설치되어 있는가?(2층 설치-윗쪽은 0.85m 내외, 아래쪽은 0.65m 내외)	A-제7호
	손잡이의 지름은 3.2cm 이상 3.8cm 이하로 되었는가?	A-제7호, J
장 애 물	손잡이가 벽에 설치되었을 경우 벽과 손잡이의 간격은 5cm 내외인가?	A-제7호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굽질부분에는 점자표지판이 부착되어 있는가?	A-제7호
통 로	통로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m~21m 이내의 벽면돌출물체의 높이 0.1m 이하인가?	A-제7호
	통로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m~21m 이내의 돌립방지용 난간 또는 보호벽을 설치하는가?	A-제7호
벽 면	휠체어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쥙풀레이트(바닥면에서 0.35m)가 설치되어 있는가?	A-제7호, J
	복도의 모서리 부분은 둥글게 여강되어 있는가?	A-제7호, J

<표19> 계단 및 승강기

시설	세부항목	작성기준
계 단	계단·승강기 등의 0.3m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고 시작장애인을 위한 바닥계의 길강 등을 달리 하였는가?	A-제7호, J
	계단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8m 이내마다 계단참이 설치되어 있는가?	A-제8호
	계단 및 참의 유호폭은 1.2m 이상인가?(단 옥외의 난계단 0.9m 이상)	A-제8호, J
	계단에는 철면이 설치되어 있는가?	A-제8호
	디딤판의 너비는 0.28m 이상으로 균일하게 되어 있는가?	A-제8호, J
	철면의 높이는 0.18m 이하로 균일하게 되어 있는가?	A-제8호, J
마 강	디딤판의 끝부분이 떨끌이나 묵발의 끝이 걸리지 않게 철면의 기울기는 60° 이상으로 되어 있는가?	A-제8호
	계단코는 3cm 이상인가?	A-제8호
	계단의 축면에 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난간 하부에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0cm 이상의 추락방지턱이 설치되어 있는가?	A-제8호
	계단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되어 있는가?	A-제8호
손 잡 이	계단코에는 출입문을 하거나 경길고무류 등의 미끄럼방지재로 마감되어 있는가?(단 전체적으로 미끄럼방지재로 마감시 제외)	A-제8호, J
	계단코의 색상은 계단의 바닥색상과 달리하여 설치되어 있는가?	A-제8호
	계단의 축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되어 있는가?(단 방화문 등의 특수한 경우 제외)	A-제8호
손 잡 이	손잡이 양끝부분 및 굽질부분에는 충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이 부착되어 있는가?	A-제8호
	손잡이가 있을 시 시작과 끝부분에 수평손잡이(0.3m)가 연장 설치되어 있는가?	A-제8호
	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m 이상 0.9m 이하로 설치되어 있는가?	A-제8호

<표20> 장애인용 승강기

시설	세부항목	작성기준
승 강 기	장애인용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가?	A-제9호
	승강기 출입구 바닥에 강지용 점형블록이 설치되어 있는가?	J
	장애인용 승강기는 건축물 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가?	A-제9호
	승강기 전면에는 1.4m×1.4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고 있는가?	A-제9호, J
	승강장 바닥과 승강기 바닥의 틈은 3cm 이하로 되어 있는가?	A-제9호, J-제8조, J
	승강기 내부의 유호바닥면적은 약 1.1m 이상, 깊이 1.35m 이상으로 되어 있는가?	A-제9호, J
조 작 관 판	승강기 출입문 유호폭은 0.8m 이상으로 되어 있는가?	A-제9호, J-제8조, J
	승강기의 안팎에 설치되는 모든 스위치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m 이상 1.2m 이하로 설치되어 있는가?	A-제9호
	조작판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m 내외로 되어 있는가?(단 유호바닥면적 1.4m×1.4m 이상의 경우 축축에 설치가능)	A-제9호, J-제8조, J
	승강기 내부의 조작판은 전입방향 우측면에 가로형으로 설치되어 있는가?	A-제9호
손 잡 이	조작판은 버튼식으로 설치되어 있는가?	A-제9호
	조작판·통화장치 등에는 점자표지판이 부착되어 있는가?	A-제9호
	승강기 내부에는 수평손잡이가 연속하여 설치되어 있는가?	A-제9호
	손잡이 양끝부분 및 굽질부분에는 충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이 부착되어 있는가?	A-제9호
거 울	손잡이가 있을 시 시작과 끝부분에 수평손잡이(0.3m)가 연장 설치되어 있는가?	A-제7호
	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m 이상 0.9m 이하로 설치되어 있는가?	A-제7호, J
	승강기 내부의 후면에는 출입문의 개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견고한 계걸의 거울 등이 부착되어 있는가?(단 유호바닥면적 1.4m×1.4m 이하인 경우 제외)	A-제9호, J-제8조, J
장 치	각종의 승강장 및 내부에는 승강기의 도학여부를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향신호장치가 설치되어 있는가?	A-제9호
	승강기 지식개폐장치를 설치되어 있는 경우 바닥면으로부터 0.3m~1.4m	A-제9호
	각 종의 장애인용 승강기의 호흡버튼의 0.3m 전면에는 점형블록이나 바닥계의 길강 등을 달리하고 있는가?	J
유 리	승강기 내부의 상황을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승강기 전면의 일부에 유리를 사용하고 있는가?	A-제9호

(3) 위생시설

<표21> 화장실

시설	세부항목	작성기준
겁	장애인용 화장실이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되어 있는가?	A-제13호
근	화장실 0.3m 전면에는 점형블록이나 바닥표면 개걸이 끌리 되어 있는가?	A-제13호
벽	화장실 출입구(문)앞 벽면에는 성별을 구별 할 수 있는 짐자표지판이 부착 되어 있는가?	A-제13호
면	화장실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가 없는가?	A-제13호
바	화장실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가 없는가?	A-제13호
닥		

<표22> 대변기

시설	세부항목	작성기준
대변기는 출입구(문)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가?	A-제13호	
대변기의 칸막이는 유효바닥면적이 폭1.0m이상, 깊이1.8m이상으로 되어 있는가?	A-제13호	
대변기의 좌·우측에는 휠체어의 축면길이공간(0.75m이상)이 확보되어 있는가?	A-제13호	
출입문의 폭과유료화는 0.8m이상으로 되어 있는가?	A-제13호, I-제15호, J	
출입문에는 화장실 사용여부를 시작으로 알 수 있는 숫자가 되어 있는가?	A-제13호	
출입문의 형태는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 역닫이문은 바깥쪽으로 개폐, 안쪽으로 개폐시 활동공간이 충분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A-제13호	
대변기의 형태는 양면기로 되어 있거나 바닥부착형인 경우 변기전면의 트랩부분에 휠체어의 발판이 닿지 아니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가?	A-제13호	
대변기 좌대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m이상 0.45m이하로 되어 있는가?	A-제13호, J	
대변기의 양옆에는 수평(양쪽모두설치) 및 수직손잡이(한쪽설치)가 설치되어 있는가?	A-제13호	
수평손잡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6m이상 0.7m이하의 높이에 설치되어 있는가?(한쪽은 변기중심에서 0.45m이내, 다른한쪽은 회전식, 손잡이간격 0.7m내외)	A-제13호	
수직손잡이의 길이는 0.9m이상, 손잡이가 아랫부분이 바닥면으로부터 0.6m내외에 설치되어 있는가?(단 바닥에 설치할 경우 휠체어 활동반경 유지)	A-제13호, I	
화장실의 크기는 2m×2m이상인 경우 천장에 부착된 사다리형태의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는가?	A-제13호	
장애인·휴지걸이 등을 대변기에 앉은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가?	A-제13호	

<표23> 소변기

시설	세부항목	작성기준
위치	소변기는 출입구(문)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가?	A-제13호, J
구	소변기의 구조는 바닥부착형으로 되어 있는가?	A-제13호, J
조	세정스위치가 전자감응식으로 되어 있는가?	
수	소변기의 손잡이는 양옆에는 수평 및 수직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는가?	A-제13호, J
손	수평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m이상 0.9m이하,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0.55m내외, 좌우 손잡이의 간격은 0.6m내외로 되어 있는가?	A-제13호
잡	수직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1.1m이상 1.2m이하, 둘둘축은 벽면으로부터 0.25m내외로 되어 있는가?	A-제13호
이	수직손잡이의 경우 하단부가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가?	A-제13호

<표24> 세면대

시설	세부항목	작성기준
위치	세면대는 출입구(문)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가?	A-제13호
구	세정장치·수도꼭지 등은 광장 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되어 있는가?	A-제13호, J
수	수도꼭지는 냉·온수의 구분을 짐자로 표시되어 있는가?	A-제13호
구	휠체어사용자용 세면대의 상단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m이하, 하단높이는 0.65m이상으로 되어 있는가?	A-제13호, J
조	세면대의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가?	A-제13호
목	목발사용자 등 보행곤란자를 위한 세면대의 양옆에 수평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는가?	A-제13호, 10
거	휠체어사용자용 세면대의 거울은 세로길이 0.65m이상, 하단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9m내외이고 거울상단부분은 15°정도 앞으로 경사설치되어 있는가?	A-제13호, J

(4) 안내시설

<표25> 안내표시

시설	세부항목	작성기준
위	장애인등의 이용편의를 위한 편의시설 안내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되어 있는가?	B-제1호
치	안내표지는 대상 시설의 출입구부근 등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되어 있는가?(안내표지와 동일한 위치에 부착 또는 설치)	B-제1호
찰	안내표지의 색상은 청색과 백색을 사용하고 있는가?	B-제2호
크	안내표지의 크기는 단면을 0.1m이상으로 하였는가?	B-제2호
내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표지에는 짐자를 병기하여 설치되어 있는가?	B-제2호
용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표지와 청각장애인을 위한 기본형과 함께 설치되어 있는가?	B-제2호

<표26> 점자블록

시설	세부항목	작성기준
크	점자블록의 크기는 0.3m×0.3m인 표준형으로 하고 바닥개의 높이와 동일하게 되어 있는가?	A-제16호
기	점자블록의 색상은 황색으로 되어있거나 바닥개의 색상과 구별하기 쉬운 것을 사용하는가?	A-제16호
찰	점형블록은 불록당 36개의 둘줄점을 가진 표준형인가?	A-제16호
형	점형블록의 둘줄점은 반구형·원형·질단형 또는 이 두가지의 혼합 매설형으로 높이는 0.6~0.12m로 되어 있는가?	A-제16호
불	선형블록은 불록당 4개의 둘줄신을 가진 표준형으로 되어 있는가?	A-제16호
록	선형블록의 둘줄신은 상단부평면형으로 되어 있고 둘줄신의 높이는 0.5~0.12m로 되어 있는가?	A-제16호
신	선형블록은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해서 설치되어 있는가?	A-제16호

<표27> 유도 및 안내설비

시설	세부항목	작성기준
안	주요시설 및 방의 해치를 짐자, 양각면 또는 선으로 간략하게 표시하였는가?	A-제17호
내	일반안내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짐자를 병기하여 설치하였는가?	A-제17호
관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장치는 주요시설 또는 방의해치를 음성으로 안내하였는가?	A-제17호
음	시각장애인 유도선호장치는 음향·시각·음색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였는가?	A-제17호
성	기타 신호장치를 소지한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경우 대상시설의 이름을 안내하는 전자식 신호장치를 설치되어 있는가?	A-제17호
안내	청각장애인을 위한 비상벨설비 주변에는 짐자형태의 비상경보등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가?	D

(5) 기타시설

<표28> 접수대 및 작업대

시설	세부항목	작성기준
접	접수대의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을 확보되어 있는가?	A-제21호
수	접수대상단까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7m이상 0.9m이하로 되어 있는가?	A-제21호
대	접수대의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5m이상, 깊이 0.45m이상의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가?	J
작	작업대의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을 확보되어 있는가?	J
업	작업대 상단까지의 높이는 바닥 면으로부터 0.7m이상 0.9m이하로 되어 있는가?	A-제21호
대	작업대의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 면으로부터 높이 0.65m이상, 깊이 0.45m이상의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가?	A-제21호
비	접액업무안내책자·작업경 및 공중묘사전송기·휠체어 등이 비치되어 있는가?(휠체어는 업무시설의 한함)	E
치	유도블록	현관출입구부터 접수대까지 유도블락이 설치되어 있는가?

<표29> 공중전화

지설	세부 항목	작성기준
설 치 장 소 운 감 이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설치되어 있는가? 전화부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통로와 높이차이가 없게 설치되어 있는가? 전화부스의 전면 여유 공간이 0.9m이상 1.2m이하로 되어있는가? 전화대의 하부에는 무로 및 휠체어의 발굽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5m이상, 깊이 0.25m이상의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가? 동전 또는 전화카드투입구, 전화다이얼 및 누름버튼 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9m이상 1.4m이하로 되어있는가? 지팡이 및 목발사용자가 몸을 지지할 수 있도록 전화부스의 양쪽에 손잡이를 설치하거나, 지팡이 및 목발을 세울 곳을 마련되어 있는가?	A-제27호 A-제27호 I A-제27호 A-제27호 I A-제27호 A-제27호

4. 분석 및 평가방법

실태조사리스트를 분석은 종합하여 빈도분포와 백분율로 단순 통계처리하여 작성되며, 평가방법과 조사내용별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수집된 자료는 종합하여 빈도분포와 백분율로 단순 통계처리되었으며, <표30>의 평가방법과 조사내용별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로 표시하였고, 해당되는 경우 이행여부를 ○, ×로 기입하였다. 이행되고 있으나 정도가 미약하거나 복수 질문의 경우 부분적으로만 이행되고 있을 때에는 ×로 표시하였고, 통계분석 시 ×는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2) 공중전화의 항목별 분석: <표 7>에서 대항목<시설>과 그에 따른 세부항목의 이행 여부를 우측열에 각각 기입하였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각 대항목<시설> 별로 우측 하단에 빈도 분포의 백분율을 기입하였다. 즉, “설치장소” 항목에서 우측 상단의 12/17 (71%)는 현장조사결과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설치되어 있는 곳은 총 17개 중 12개로서 71%의 시설이 조사내용을 이행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를 종합하여 설치장소, 구조, 조작설비, 손잡이등의 설치정도를 대항목 별로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우측 하단의 71/96(73%)은 현장조사 결과, 해당되는 96항목중 71항목(73%)이 이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30> 공중전화의 항목별 분석(예시)

지설	세부항목	설치정도
설 치 장 소 운 감 이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설치되어 있는가? 전화부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통로와 높이차이가 없게 설치되어 있는가? 전화부스의 전면 여유 공간이 0.9m이상 1.2m이하로 되어있는가? 전화대의 하부에는 무로 및 휠체어의 발굽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5m이상, 깊이 0.25m이상의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가? 동전 또는 전화카드투입구, 전화다이얼 및 누름버튼 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9m이상 1.4m이하로 되어있는가? 지팡이 및 목발사용자가 몸을 지지할 수 있도록 전화부스의 양쪽에 손잡이를 설치하거나, 지팡이 및 목발을 세울 곳을 마련되어 있는가?	12/17(71%) 10/17(59%) 13/17(76%) 14/15(93%) 15/15(100%) 7/15(47%) 7/15(47%) 71/96(73%)
구조	구조	35/51(68%)
조작 설비	조작 설비	15/15(100%)
손 잡 이	손 잡 이	7/15(47%)
	합계	

5. 결론

5.1 연구의의 및 연구결과

본 실태조사리스트연구를 통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접근성을 파악할 수 있는 실태조사리스트를 개발하였다. 이것은 “국민주권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의 법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인간의 도덕적인 면 이상을 의미한다. 즉 누구나 누려야할 “생활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라는 약속을 발생하게 만들었으며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공공용시설 등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고 등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시설을 자발적으로 시설과 설비를 실태조사리스트를 통해 보완 운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인테리어디자이너는 디자인에 앞서 보다 체계적이고 실제생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선행연구적 입장에 서서 기본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본 연구를 토대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부적절한 부분을 수정 보완하는 등 디자인에 적용하여 실내디자인의 목적인 편의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5.2 연구결과의 시사점

본 연구결과는 편의시설이 갖는 법률적인 차원의 강제성이 아닌 시설주체로 하여금 자발적인 행동을 유발하여 수정 및 보완하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접근의 자유”를 가능케 할 것이다.

5.3 향후연구과제

실태조사리스트 대상시설의 확대연구와 세부시설 등의 연구 시설을 통한 심리적인 측면을 감안한 심층적인 연구가 장차의 연구 과제라 하겠다. 즉, 기존 성립되어져 있는 규정이외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물리적 접근과 정신적 접근의 병행 연구가 필요하고 실태조사리스트의 특성상 주관적인 해석방법이 주가 되므로 이것에 따른 평가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장애우권의문제연구소 :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장애인 차별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2000)
- Center for the Universal Design: The Universal Design File, North Carolina University, NC, (1998)
- 보건사회연구원: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개별 장애유형별 장애 출현율" (2001)
- 통계청: "장애인구추계" (1996)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령집: (1999)
- 권도용: "장애인 재활복지의 이념과 목적" 한국 아·태 장애인 10년 연구모임, (1995)
- 성정현: "지체장애인과 환경간의 적응적 적합성 (Adaptive fit)에 관한 연구", 서울대, (1990)
- 제48차 UN총회: 제48차, (1993)
- W. Goodman : "장애인의 이동훈련" 정입회관(역), (1995)
- 에이타 야시로 외, 송영욱(역), "ADA의 충격" 한국장애인 출판부 150p (1993)
- 조철호: "장애인을 고려한 도시가로공간의 Barrier-Free 계획", 제활, (1994.05)
- 강경선: "접근권이란 무엇인가?" 함께걸음, (1994)
- 서선희: "우리나라 장애인편의시설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 (1993)
- 권오선 외: "서울시내 공공건물의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실태조사" 국립재활원, (1993)
- 박용환 저: "장애인을 위한 건축설계" 공간사, P23 (1992)
- 천진희·김혜원: 실내디자인 24호, 한국실내디자인학회 pp208-219(2000)
- 온순기: "한국불교 건축문화 양식을 적용한 사찰 공중화 장실 디자인 연구" 중부대, (1999)